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4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다자녀 학생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을 교육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선정 방법을 정함(안 제3조).

다. 교육비 지원 범위와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1052jjh@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재정 상황, 자녀의 연령, 다자녀 학생의 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정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 수익자부담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1항의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③ 교육비 지원의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2. 비용 발생 요인

○ 교육비지원 항목인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 고교무상교과서,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유치원 학부모부담경비

3. 관련조문

○ 제4조(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 수익자부담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의 학생 대상(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포함)
가) 초·중·고등학생(2017.6.30.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학생수	전체 학생수	다자녀학생수(셋째 이상 학생 수)					비고 (비율)
		초	중	고, 기타	특수	합계	
학생수	184,779	8,617	4,845	6,394	125	19,981	10.81%

나) 유치원생(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다자녀 유아만 지원)

(단위 : 명)

구분 학생수	전체 학생 수	설립구분		다자녀학생수		비고 (비율)
		공립	사립	공립	사립	
학생수	25,067	4,766	20,301	1,001	1,502	공·사립 비율 상이 (공립 21.0% 사립 7.4%)

2) 현재, 유·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을 기준으로 예산 추계
- 학생수 및 대상 항목 비용 단가 동결

지원항목	금액	지원기준	연간 지원금액	비고
○ 유치원 학부모부담경비		월1회, 60,000원	720,000원	
○ 고교 입학금		연1회, 16,000원	16,000원	
○ 고교 수업료		연4회, 350,100원	1,400,400원	
○ 고교 학교운영지원비		연4회, 72,000원	288,000원	
○ 중학교 급식비		185일, 3,280원	606,800원	급식단가:
○ 고교 급식비		225일, 3,440원	774,000원	2017.3월평균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연 60만원	600,000원	
○ 고교무상교과서		연1회, 평균단가 78,600원	78,600원	2016년 평균
○ 체험학습비	수학여행	초중 110,000원, 고 220,000원	좌동	
	수련활동	초중 66,000원, 고 50,000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비고
유치원 학부모부담경비		1,081,440	1,081,440	1,081,440	1,081,440	1,081,440	5,407,200	동결
고교 입학금		34,096	34,096	34,096	34,096	34,096	170,480	동결
고교 수업료		8,954,158	8,954,158	8,954,158	8,954,158	8,954,158	44,770,790	동결
고교 학교운영지원 비		1,841,472	1,841,472	1,841,472	1,841,472	1,841,472	9,207,360	동결
고교 급식비		4,948,956	5,097,425	5,250,347	5,407,858	5,570,094	26,274,680	매년 3%증액
초중고 방과후 학교자유수강권		11,913,600	11,913,600	11,913,600	11,913,600	11,913,600	59,568,000	동결
고교무상교과서		502,568	502,568	502,568	502,568	502,568	2,512,840	동결
체험학습비 (수학여행 수련활동)		1,313,712	1,313,712	1,313,712	1,313,712	1,313,712	6,568,560	동결
총계		30,590,002	30,738,471	30,891,393	31,048,904	31,211,140	154,479,910	

※ 기준 단가의 변화에 따라 추계 결과 변경될 수 있음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하단 【붙임】 자료 참고

6. 재원조달 방안 : 자체 재원(교육비특별회계)

7. 작성자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신성희(☎616-8724)

8. 확인자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장 김선용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30,590,002	30,738,471	30,891,393	31,048,904	31,211,140	154,479,910	
자체수입	30,590,002	30,738,471	30,891,393	31,048,904	31,211,140	154,479,910	
세 출	30,590,002	30,738,471	30,891,393	31,048,904	31,211,140	154,479,910	
유치원 학부모부담경비	1,081,440	1,081,440	1,081,440	1,081,440	1,081,440	5,407,200	
고교 입학금	34,096	34,096	34,096	34,096	34,096	170,480	
고교 수업료	8,954,158	8,954,158	8,954,158	8,954,158	8,954,158	44,770,790	
고교 학교운영지원비	1,841,472	1,841,472	1,841,472	1,841,472	1,841,472	9,207,360	
고교 급식비	4,948,956	5,097,425	5,250,347	5,407,858	5,570,094	26,274,680	
초중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11,913,600	11,913,600	11,913,600	11,913,600	11,913,600	59,568,000	
고교무상교과서	502,568	502,568	502,568	502,568	502,568	2,512,840	
체험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	1,313,712	1,313,712	1,313,712	1,313,712	1,313,712	6,568,56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30,590,002	30,738,471	30,891,393	31,048,904	31,211,140	154,479,910
	자체수입	30,590,002	30,738,471	30,891,393	31,048,904	31,211,140	154,479,910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참고 사항 : 급식비 매년 3% 증액

【참고자료】

<각 항목 산출기초 >

1. 유치원 학부모부담경비(사립유치원 재원중인 다자녀 학생) 산출기초

지원항목	학생수	지원 기준액(원)	지원예정액(천원)	비고
유치원 학부모부담경비	1,502	60,000	1,081,440	매월지원

2.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산출기초

지원항목	학생수	지원 기준액(원)	지원예정액(천원)	비고
고교 입학금	2,131	16,000	34,096	학생수 33%
고교 수업료	6,394	1,400,400	8,954,158	4분기
고교 학교운영지원비		288,000	1,841,472	4분기
합계	8,641	1,704,400	10,829,726	

3. 고교 급식비 산출기초

지원항목	평균지원일수	학생수	지원 기준액(원)	지원예정액(천원)	비고
고교 급식비	225	6,394	3,440	4,948,956	매년 3% 증액

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산출기초

급별	학생수	지원기준액	방과후자유수강권 산출기초	지원예정액(천원)	비고
초	8,617	1인당 600,000원	600,000원×8,617명	5,170,200	
중	4,845		600,000원×4,845명	2,907,000	
고	6,394		600,000원×6,394명	3,836,400	
합계	19,856			11,913,600	

5. 고교무상교과서 산출기초

지원항목	학생수	지원 기준액(원)	지원예정액(천원)	비고
고교무상교과서	6,394	78,600	502,568	교과서 평균단가

6. 체험학습비 산출기초

급별	학생수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비고
초	8,617	110,000원×1,436명	157,960천원	66,000원×2,872명	189,552천원	수학여행 - 초·중고 한학년 수련회 - 초 4.5학년 - 중 1.2학년 - 고 1학년
중	4,845	110,000원×1,615명	177,650천원	66,000원×3,230명	213,180천원	
고	6,394	220,000원×2,131명	468,820천원	50,000원×2,131명	106,550천원	
소계	19,856	804,430천원		509,282천원		
합계		1,313,712천원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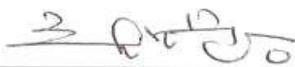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단

연번	의원명	서명	비고
1	구 미경		
2	김 민석		
3	크릭 증찬		
4	박 해연		
5	박 병채		
6	김 등섭		
7			
8			
9			
10			
11			
12			
13			
14			
15			